

# 지방양여금제도의 財政的 衡平化機能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iscal Equity Functioning of the Revenue Sharing System

林 聖 日

(韓國地方行政研究院 責任研究員)

### <目 次>

- I. 序
- II. 지방양여금제도의 意義
- III. 지방양여금의 配分基準 및 配分實態
- IV. 지방양여금의 財政的 衡平化機能에  
대한 분석
  - 1. 접근방법 및 데이터
  - 2. 상관관계분석 결과
  - 3. 회귀분석 결과
- V. 結 論

### I. 序

이 글의 목적은 地方讓與金이 재정적 측면에서 지니는 衡平化機能에 관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제공하는 移轉支出은 크게 보아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지방양여금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지출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정부간에 존재하는 財政의 수직적, 수평적 不均等을 교정하는

財政調整制度의 역할과 동시에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사업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資源配分(resource allocation)機能을 담당한다. 이 세가지 類型의 이전지출간에는 정책목표는 물론 財源, 사용용도 및 범위, 재정통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정책목표면에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국고보조금제는 그 운영과정에서 정책의 효율성(efficiency)에 상대적으로 置重하는 반면 지방교부세제는 상대적으로 형평성(equity)에 치중하면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비해 地方財政調整制度의 일환으로서 제한적인 資源配分機能을 지니는 지방양여금제는 巨視的 관점에서 파악할 때 현재로서는 그 정책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지방양여금제도의 도입목적이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있음<sup>1)</sup>을 이해할 때 지방양여금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에 입각하여 운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 글은 지방양여금제의 재정적 衡平化機能에 관하여 實

1) 지방양여금법 제1조

證分析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우리나라의 市(특별시, 직할시, 시)와 郡이며, 특히 본 연구에서는 1992년도 지방양여금 配分實態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指標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지방양여금의 형평화기능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 II. 地方讓與金制度의 意義

지방양여금제도는 地方財政擴充과 도로정비 사업들을 통한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되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의 일정 稅目(토지초과이득세, 酒稅, 전화세)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징수하고 그 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준 또는 공식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게 讓與하는 地方財政調整制度를 의미한다.

지방양여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稅收入을 共有한다는 의미에서 共同稅的 특성을 지니는 한편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정부간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補助金의 특성을 지닌다. 지방양여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와 더불어 서로 다른 정부간에 존재하는 재정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는 재정조정제도적 기능을 담당할 뿐 아니라,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는 특정사업들에 대한 자원배분기능을 담당하도록 의도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지방양여금을 통하여 재정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은 재정의 공평성(fairness) 또는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있다. 여기에서 지방양여금이 지니는 기능과 기본특성을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根幹인 지방교부세 및 국

고보조금과 비교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sup>2)</sup>

우리나라의 地方財政調整制度는 다양한 정책목적을 가지고 운영되며 그 운영과정에서 형평과 경제적 효율성 그리고 公共選擇 및 정치적 선택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제는 국가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의 資源配分機能과 부분적인 分配機能을 하는 반면, 지방교부세제는 재정의 수직적,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는 형평화기능을 주로 담당한다. 따라서 국고보조금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상대적인 정책목표를 두는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재정운영의 형평성을 구현하는데 정책목표를 置重하고 있다.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이나 보조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분명한 정의와 각종 수행조건이 부수하는데 비해 지방교부세는 사용용도 및 과정에 조건이 붙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비해 지방양여금은 그 기능과 역할면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의 중간적 특성을 지니는 동시에 선진국에서 활동되는 包括補助金(Block Grants)과 유사한 성격을 보인다. 지방양여금은 일정한 讓與要件을 지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정공식에 따라 양여금이 배분되는 것과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측면에서 지방교부세와 유사하지만, 포괄적인 범위에서 양여금의 사용용도가 지정되는 것과 양여금대상사업의 범위, 조건 등이 규정되는 측면에서는 국고보조금적 특성을 지닌다.

2)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1991, pp.37~39, 94~99.

### III. 지방양여금의 配分基準 및 配分實態

지방양여금의 財源은 토지초과이득세의 50%, 酒稅의 60%, 그리고 전화세수입 100%로 구성된다. 1992년도 예산을 기준할 때, 지방양여금 총액은 1조2,506억원이며 여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1,000억원, 酒稅 7,986억원, 전화세수입 3,52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主財源은 酒稅收入임을 알 수 있다.<sup>3)</sup> 1991년도 지방양여금 총액이 5,570억원인 것을 고려할 때, 1992년도 지방양여금은 前年에 비해 약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1991년에 비해서 1992년도 지방양여금 예산이 증가한 원인은 양여금 재원의 자연증가분과 더불어 酒稅收入比率의 인상(15%에서 60%로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1〉 지방양여금의 財源  
(단위: 억원)

	1991	1992
합 계	5,570	12,506
토지초과이득세	577	1,000
酒 稅	1,587	7,986
전 화 세	3,406	3,520
내무부자료		

지방양여금의 적용대상사업은 크게 보아 도

3) 지방양여금의 主 수입원이 酒稅인 점과 동시에 그 사용용도가 도로정비사업 등에 제한되는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합리성을 缺하고 있다. 일반적 목적 이 아닌 특정목적의 재정활동에 있어서는 財源과 재원의 사용용도간에는 합리적인 연계가 반드시 존재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에 관하여는 새로운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로정비사업(직할시도, 치방도, 市의 국도, 市道, 郡道, 농어촌도로등), 농어촌 지역개발사업(定住生活圈開發, 奧地開發事業), 수질오염방지사업(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도관 정비, 오수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등), 청소년육성사업 등으로 구분된다. 지방양여금법 제5조에 의하면 대상사업별 양여금 財源配分은, 도로정비사업이 양여금재원의 1,000분의 7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 1,000분의 115, 수질오염방지사업이 1,000분의 170, 그리고 청소년육성사업이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분받는 것으로 算定되어 있다. 이러한 배분기준에 입각하는 양여금配分內譯(199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지방양여금은 주로 도로정비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로정비사업의 경우 전체 지방양여금의 70.5%를 차지하는 8,817억원이 양여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 수질오염방지사업(2,126억원:17.0%), 농어촌지역개발사업(1,438억원:11.5%), 청소년육성사업(125억원:1.0%)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대상사업과 財源配分比率에 입각하여 지방양여금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배분되는데, 여기에서 讓與基準에 관하여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양여금법 제6조에 의거하면, 지방도로정비사업의 경우 양여기준은 직할시도는 未開發 및 미획장도로의 면적합산비율을, 지방도는 미개설 및 미포장도로 연장합산비율을, 郡道와 농어촌도로는 미포장도로의 연장비율을 중심으로 設定되고 있다. 그리고 市의 국도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시의 市道는 시장이 수립하는 중·장기계획과 당해

&lt;표 2&gt;

지방양여금 配分內譯(1992)

사 합 업 계	배 분 비 율 (%)	배분금액(억원)
	100.0	12,506
도로정비사업	70.5	8,817
직할시도	18	1,597
지방도	20	1,763
市의 국도	15	1,323
市의 市道	4	353
郡道	34	2,998
농어촌도로	9	793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11.5	1,438
정주생활권 개발	66	949
오지개발	34	489
수질오염방지사업	17.0	2,126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72	1,530
하수도관 정비	11	234
분뇨처리시설 설치	10	213
오염하천 정화	7	149
청소년 육성사업	1.0	125
내무부자료		

년도의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지방양여금의 배분기준이 설정된다. 그리고 직할시도 정비사업을 위하여 직할시에 양여할 양여금을 補正할 때는 인구지수, 자동차지수, 地價指數 등을 고려하는 補正算式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대상 面數의 비율과, 오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面數의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수질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은 환경처장관 및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하며, 하수도관 정비사업의 경우 직할시장,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중·장기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청소년육성사업에 대한 양여기준은 체육청소년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중·

장기계획과 당해년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금액의 단위사업별 양여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편, 자치단체별 양여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재정여건 및 인구 등을 참작하여 補正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지방양여금은 그 배분과정에서 도로정비사업부문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형평화기능을 담당하도록 제도적裝置가 되어 있을 뿐, 巨視的 차원에서 재정의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는 구체적 制度裝置는 구비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既存의 지방양여금제도하에서 지방양여금이 재정의 형평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정비사업부문의 양여금 配分指標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간에 일정한 관계가 존재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도로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양여금대상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만 지방양여금을 통한 형평화기능이 적절히 수행될 것이다.

## IV. 지방양여금의 貢財的 衡平化機能에 대한 분석

### 1. 접근방법 및 데이터

본 연구에서 지방양여금의 형평화기능을 파악할 목적으로 취한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방양여금이 재정적 형평화기능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지방양여금의 배분실태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간에는 실제적으로 일정한 상관관계내지는 함수관계가 존재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지방양여금이 貢財的 형평화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양여금의 배분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fiscal capacity) 또는 租稅力(tax capacity)과 반비례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지방양여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그리고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論理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 配分實態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간의 관계를 통계분석 및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지방양여금의 형평화기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대표하는 지표로 사용한 것은 1인당 지방세부담액이다. 일반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財政力指標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1인당 주민소득

이지만, 우리의 경우 신뢰성있는 주민소득자료가 이용불가능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1인당 지방세부담액을 자치단체의 재정력지표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러한 접근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재정력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收入源*을 통하여 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그 능력은 지방정부의 徵收可能資源 크기에 의해서 결정된다<sup>4)</sup>는 사실을 인식할 때, 지방세수입이 주민소득에 대한 次善의 변수로서 사용되어 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지역은 서울특별시와 5개 직할시, 그리고 73개 일반시와 137개 郡을 포함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郡과, 군을 제외한 市지역(특별시, 직할시, 시)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내무부의 1992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에서 주로 인용하였으며 부분적으로 지방재정연감과 기타 통계자료를 참조하였다. 1인당 데이터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구데이터는 내무부의 한국도시연감(1990)을 참조하였다.

### 2. 상관관계 분석결과

市데이터를 기초로 1인당 지방양여금과 1인당 지방세수입, 1인당 지방교부세, 1인당 국고보조금간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에 관해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市의 경우 세 變數 가운데서 1인당 지방양여금과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는 존재하지 않

4) Helen F. Ladd and John Yinger, America's Ailing Cities,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1989, pp.45~46.

았다(다만 1인당 지방교부세의 경우 상관관계가 비록 낮지만 0.3418 수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인당 지방양여금과 市의 財政力指標로 사용된 1인당지방세부담액을 비교한 결과, 兩者간에는 실제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0.0658). 이러한 사실은 지방양여금이 우리나라 都市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분되고 있

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방양여금이 그 도입목적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수평적불균등을 교정하는 형평화기능을 담당하지 못함을 결론지우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은 1인당 지방양여금과 1인당세입간의 상관관계가 0.1943으로서 매우 낮은 사실에서도 간접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

〈표 3〉

상관관계 분석결과(市)

	1인당세입	1인당지방세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국고보조금
1인당지방양여금	0.1943	-0.0658	0.3418	-0.2271

이러한 市의 분석결과는 郡地域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郡데이타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지방양여금과 1인당 지방세부담액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낮은 負의 값(-0.1167)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양여금이 郡의 재정력과는 무관하게 배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지방양여금이 郡간에 수평적 財政均等化機能을 거의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결론지우는 사실이다. 郡 데이타의 분석결과 1인당 지방양여금과 1인당 지방교부세와의 상관관계는 0.6658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1인당 지방양여

금과 1인당 국고보조금과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은 것(0.2116)으로 타나난다. 그리고 郡의 경우 市와는 달리 1인당 지방양여금과 1인당 세입과의 상관관계가 0.5190으로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市에 비해 郡에 있어서는 지방양여금이 약간의 재정적 형평화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사실이다. 市에 대한 분석결과와 郡의 분석결과가 조금 相異한 이유는, 평균적으로 볼 때, 郡財政에서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市財政에서 지방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중 보다 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4〉

상관관계 분석결과(郡)

	1인당세입	1인당지방세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국고보조금
1인당지방양여금	0.5190	-0.1167	0.6658	0.2116

여기에서 1인당지방세와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지방양여금 그리고 1인당 국고보조금과

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표 5〉, 〈표 6〉 참조).

〈표 5〉

상관관계 분석결과(市)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지방양여금	1인당국고보조금
1인당지방세	-0.4004	-0.0658	-0.2141

市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간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상관관계가 낮거나 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인당지방세와 1인당지방교부세간의 상관관계는 -0.400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간에 이러한 逆의 상관계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비록 상관관계가 높지 않지만), 지방교부세가 지방세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市에는 적게 그리고 지방세수입이 적은 市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서 지방교부세의 형평화기능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1인당지방세와 1인당지방양여금간에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상관관계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1인당지방세와 1인당국고보조금간에도 매우 낮은 負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지방교부세는 부분적으로 형평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형평화기능을 거의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市에 관한 결론은 郡의 경우에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표 6〉참조).

〈표 6〉

상관관계 분석결과(郡)

	1인당지방교부세	1인당지방양여금	1인당국고보조금
1인당지방세	-0.4226	-0.1167	-0.2123

〈표 6〉에 따르면 郡의 경우에도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負의 상관관계로 나타나는 동시에, 상관관계가 낮거나 또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1인당지방세와 1인당지방교부세간의 상관관계는 -0.4226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록 상관관계가 높지 않지만, 지방교부세가 부분적으로 형평화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인당지방세와 1인당지방양여금 그리고 1인당 국고보조금간에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등을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할 때, 郡의 경우에도 市와 마찬가지로, 지방교부세는 형평화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은 형평화기능을 거의 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 분석을 통하여 지방양여금의 형평화기능에 관하여 보충적으로 살펴보았다. 변이계수 분석은 기본적으로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예산액에 대한 변이계수와, 지방양여금을 포함하는 1인당 예산액에 대한 변이계수를 비교·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과정에서 만일 지방양여금이 형평화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兩者の 변이계수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해야만 할 것이다. 변이계수 분석결과를 담고 있는 〈표 7〉에 의하면, 지방양여금은 미미한 수준의 형평화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市와 郡 두 경우에 있어서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1인당세입액에 대한 변이계수가 지

방양여금을 포함하는 1인당세입액의 변이계수에 비하여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변이계수가 시와 군의 경우 각각 0.368, 0.306인데 비해 지방양여금을 포함한 변이계수가 각각 0.360,

0.29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양여금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를 교정하는 재정의 형평화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지적해 준다.

〈표 7〉

變異係數 분석

	市	郡
1인당 지방세입(지방양여금 포함)	0.360	0.292
1인당 지방세입(지방양여금 제외)	0.368	0.306

### 3. 回歸分析 결과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配分要因이 인구와 재정력(1인당지방세)이라는 가정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양여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및 1인당지방세액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실제적으로 지방양여금의 배분기준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未開設 또는 미포장도로비율 등의 지표를 기준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지표에 궁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및 인구변수라는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sup>5)</sup>. 회귀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앞서 사용된 시·군 데이터로서

기본적으로 횡단면데이터(cross-section data)이며, 회귀분석결과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회귀분석결과에 따르며, 회귀방정식의 결정계수인  $R^2$ 값이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분석에 사용된 變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弱하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분석 변수의 설정(variable specification)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지방양여금에 대한 決定要因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1인당지방세)이나 인구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결과는, 미개설, 미포장도로의 연장합산비율 등의 도로지표가 지방양여금으로 하여금 재정의 형평화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게 하는 적합한 지표가 아님을 逆說的으로 암시해준다. 한편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통계적 有意性을 파악할 때, 시의 경우 1인당지방세액 變數, 그리고 군의 경우 인구변수가 상대적으로 t값이 작아서 통계적 有意性에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된 회귀방정식의 설명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경우 인구변수가, 그리고 郡의 경우에는

5) 회귀분석에 앞서 우리나라의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포장율과 1인당지방세 및 지방세수입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관관계는 각각 0.4532, 0.5184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도로포장율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회귀분석 모델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것을 암시하는 사실이다.

(표 8)

## 회귀분석 결과

## I. 市의 경우

$$LA = 2,259 \text{천원} + 0.2179T + 0.0023P, \quad R^2 = 0.3224$$

(1.30)      (2.99)

## II. 郡의 경우

$$LA = -114 \text{천원} + 0.1759T + 0.0063P, \quad R^2 = 0.4541$$

(6.35)      (1.89)

여기에서 LA, T, P는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양여금, 1인당지방세액, 인구를 의미하며 (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한다.

재정력 변수가 지방양여금을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진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할 때,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재정의 수평적 불균 등을 교정하는 형평화기능은 거의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현행 지방양여금제도는 그 도입 목적과 運營實態간에 상당한 괴리현상이 존재한다고 결론지울 수 있다.

## V. 結 論

이 글의 목적은 地方財政擴充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1990년에 도입된 地方讓與金이 재정적 측면에서 지니는 衡平化機能에 관하여 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양여금의 형평화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 配分實態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는 접근방법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과정에서는 주요 變數간의 상관관계 및 單純회귀분석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지역은 기본적으로 郡과 郡을 제외한 市지역(특별시, 직할시, 시)의 두 그룹으로 구분하고 있다.

1인당 지방양여금과 市와 郡의 財政力指標로 사용된 1인당지방세부담액을 비교한 결과兩者간에는 실제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양여금이 우리나라 市 또는 郡의 재정력과는 無關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방양여금이 실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간에 수평적인 財政衡平化機能을 거의 담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결론지우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은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1인당 예산액과, 또한 지방양여금을 포함하는 1인당 예산액을 중심으로 하는 變異係數(coefficient of variation) 분석을 통하여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에 대한 근본적인 配分要因이 인구와 재정력(1인당지방세)이라는 가정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 양여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및 1인당지방세액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각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양여금에 대한 決定要因이 지방자치단체의 財政力이나 인구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變數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개설·미포장도로의 연장합산비율 등의 도로지표는 지방양여금으로 하여금 재정적 형평화기능을 수행할 수 있

게 하는 적합한 지표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現行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존재하는 재정의 수평적 불균등을 교정하는 형평화기능을 적절히 담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参考文献〉

- 내무부, 지방자치단체예산개요, 1992.  
내무부, 지방재정연감, 1991.  
내무부, 한국도시연감, 1991.  
지방양여금법  
임성일, “중앙정부의 재정균등화 시도에 요구

되는 판단준거의 제시와 그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의 실태,” 지방행정연구, 제5권, 제2호, 1990, pp.69~8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1991.

Helen F. Ladd and John Yinger, America's Ailing Cities, The Johns Hopkins Univ. : Baltimore, 1987.

Glen Bramley, Equalization Grants and Local Expenditure Needs, Gower Publishing Co. : Avebury, 1990.

Break, George F., Financing Government in a Federal System,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 C., 1980.